

瑞山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4. 9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4. 9

라. 上程日字 : 1999. 4. 14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亨來)

### 가. 提案理由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등을 인상하고, 읍·면·동이 다르게 구분규정 되어 있는 상수도요금 및 시설부담금을 단일화하였으며, 그동안 상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1)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 폐지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10조).

○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검정시험 폐지

○ 건축배관 및 배관 기능사(위생분야) 자격취득자를 배관관련 기능사로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자격자 추가적용

○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상수도로 설비면허소지자를 서산시 지역 제한 폐지

2) 시설분담금 조정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단일화 함(별표 1).

3)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별표 1).

4) 신고사항중 기구분할 신고시 시에서 확인 가능한 기구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5) 상수도요금의 조정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된 것을 단일화하고 생산원가 58% 수준인 현재 요금을 생산원가 74%수준인 평균 26%를 인상토록 함(별표 2).

6)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수도 병행사용시 세대당 월 15톤씩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용의 업종도 적용토록 함(안 제29조).

7) 사용수량의 인정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누수는 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조정(안 제30조).

8) 제수수료 조정

-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관련 수수료 인상(안 제10조).
- 제수수료 인상(안 제38조).

9)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적용 조정

욕탕 2종 적용에서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적용토록 함(별표 3).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과 수도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정한 조례임.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8% 수준인 수돗물 값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년차적으로 생산원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하여 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재원을 확충하여 상수도시설을 개선하는등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됨.
- 또한, 동지역과 읍·면의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이 이원화 된 것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수용하므로써 부득이 단일화하였음.
- 다만,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관련제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인상한바 대폭인상하게된 원가분석 산출근거 등의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도지사 로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권고된 사항으로써 서산시공고 제99-30('99.2.20)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58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4. 9 .

#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9
----------	----

제출년월일 : 1999년 4월 9일  
제출자 : 서산시장

##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및 계수수료등을 인상하고 또한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을 읍·면·동 단일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들을 개정하려고 함.

## 2. 주요골자

-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 폐지 및 자격요건 완화 (안 제10조).
-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검정시험 폐지
  - 건축배관 및 배관 기능사(위생분야) 자격 취득자를 배관관련 기능사로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자격자 추가적용
  -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설비면허소지자를 서산시 지역제한 폐지
- 나. 시설분담금 조정
-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단일화 함 (별표 1).
- 다.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 (별표 1).
- 라. 신고사항중 가구분할 신고시 시에서 확인 가능한 가구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마. 상수도 요금의 조정
-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된 것을 단일화 하고 생산원가 58% 수준인 현재 요금을 생산원가 74% 수준인 평균 26%를 인상토록 함 (별표 2).
- 바.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수도 병행사용시 세대당 월 15톤씩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용의 업종도 적용토록 함 (안 제29조).
- 사. 사용수량의 인정
-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누수는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 (안 제30조).
- 아. 계수수료 조정
-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관련 수수료 인상 (안 제10조).
  - 계수수료 인상 (안 제38조).
- 자. 안마시슬소에 대한 업종적용 조정
- 육탕 2종 적용에서 영업용과 육탕 2종으로 적용토록 함 (별표 3).

### 3. 참고 관련자료

가.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사항 (충청남도 수자원 58442-1851, '98. 10. 20호)

나.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계획 (충청남도 수자원 58442-478, '97. 4. 3호)

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회의 결정사항 (충청남도 예산 13380-329, '98. 5. 14호)

#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 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 배관 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③급수공사 대행업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동지역에서는 별표 1, 읍·면지역에서는 별표 2의”를 “별표 1”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단,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별표 4와”를 “별표 3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업용과”를 “가정용외 업종과”로,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를 “가정용가구에”로 한다.

제30조제6항중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를 “제29조제3항 또는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로 한다.

제3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한 때 (이때 사용량의 조정은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되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는 전년 동기 조정량으로 함)

제34조제2항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38조제1호 내지 제5호중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을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중 “제21조”를 “수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3을 삭제하며, 별표 4를 별표 3으로, 별표 5를 별표 4로, 별표 6을 별표 5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생략)</p> <p>1.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p> <p>3.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p> <p>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p> <p>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p> <p>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교부수수료</p> <p>가. 신규 1건당 4,000원</p> <p>나. 갱신 1건당 2,000원</p> <p>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p>	<p>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현행과 같음</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p> <p>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p> <p>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p> <p>③급수공사 대행업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지역에서는 별표1, 읍·면지역에서는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급수틀 목적으로 임시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임시용"이라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 ----- ----- 별표1 ----- ----- -----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④ (생략)</p> <p>제20조(신고) ①(생략) 1~5 (생략)</p> <p>6. 제30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p> <p>7. (생략)</p> <p>②(생략)</p> <p>제28조(요금) <u>요금은 동지역은 별표2, 읍면 지역은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u>요일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와 같이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u></p> <p>②(생략)</p> <p>③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u>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신고) ①(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p> <p>6.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단,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처리 할 수 있다.)</p> <p>7.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28조(요금) <u>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29조(업종의 구분) ①----- ----- <u>별표 3과</u> ----- ----- -----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가정용의 업종과</u> ----- ----- <u>가정용</u> ----- <u>가구에</u> ----- ----- -----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⑤(생략)</p> <p>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⑤(현행과 같음)</p> <p>⑥제29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 ----- -----</p>
<p>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생략)</p> <p>1~2(생략)</p> <p>(신설)</p> <p>3. (생략)</p>	<p>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현행과 같음)</p> <p>1~2(생략)</p> <p>3.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등의 사유로 인한 때(이때 사용량의 조정은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되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는 전년동기 조절량으로 함)</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34조(급수장치손료) ①(생략)</p> <p>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5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p>	<p>제34조(급수장치손료) ①(현행과 같음)</p> <p>②----- 별표 4 ----- -----</p>
<p>제38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료를 징수한다.</p> <p>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p> <p>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체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p>	<p>제38조(제수수료) ----- ----- -----</p> <p>1. -----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 ----- -----</p> <p>2. -----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u>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u>  <u>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u></p> <p>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u>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u>  <u>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u></p> <p>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u>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u>  <u>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u></p> <p>제42조(정수처분) ①(생략)            1~7(생략)</p> <p>8. 급수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물 판매한 자.            9~13(생략)</p> <p>제44조(과태료등)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정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3. -----  <u>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u>  <u>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u></p> <p>4. -----  <u>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u>  <u>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u></p> <p>5. -----  <u>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u>  <u>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u></p> <p>제42조(정수처분) ①(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p> <p>8. ----- <u>수도법 제9조 제1항</u> -----            -----            9~13(현행과 같음)</p> <p>제44조(과태료등) -----            -----            -----            -----            ----- <u>별표 5</u> -----            -----            -----</p>

[별표 1]

## 시 설 분 담 금

(단위 : 천원)

계량기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m/m	180	개조시에는 신규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m/m	480	
25m/m	840	
32m/m	1,770	
40m/m	2,700	
50m/m	4,200	
75m/m	8,700	
100m/m	15,000	
150m/m	33,000	
200m/m	45,000	
250m/m	63,000	

[별표 2]

## 업 종 별 요 율 표

업종별	구분	사 용 요 율	
		사 용 구 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 1~10	240
		· 11~20	270
		· 21~30	310
		· 31~40	360
		· 41~50	420
		· 51이상	490
업 무 용		· 1~20	410
		· 21~50	470
		· 51~100	550
		· 101이상	640
영 업 용		· 1~20	500
		· 21~50	550
		· 51~100	640
		· 101이상	770
육 탕 용 1 종		· 1~200	400
		· 201~300	450
		· 301~500	530
		· 501이상	630
육 탕 용 2 종		· 1~200	500
		· 201~300	600
		· 301~500	800
		· 501이상	1050
전 용 공 업 용		· 1~200	150
		· 201이상	250

[별표 3]

# 업종구분표

업종별	코드	업 태 명
가정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칠물 등의 소매점 10m<sup>2</sup>미만의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애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li> <li>· 경로당, 노인회관, 탁아소, 양로원,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li> </ul>
업무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li> <li>· 시설 소화전</li> <li>· 관공서, 병원</li> <li>· 학교</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li> <li>·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원호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외 중앙회 및 지사무소</li> </ul>
영업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접객업</li> <li>· 숙박업(여인숙 제외)</li> <li>· 유기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li> <li>·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li> <li>· 예식장</li> <li>· 사진현상소</li> <li>· 의약품, 화장품, 화장품, 제조업</li> <li>·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li>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구의 경우는 최종단계 효율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체</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안마시술소</li> </ul>
욕탕 1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목욕장업</li> </ul>
욕탕 2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목욕장업</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m<sup>2</sup>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m<sup>2</sup>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li> </ul>
전용공업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수를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li> </ul>

[별표 4]

## 급수장치손료

계량기구경별	요액	계량기구경별	요액	계량기구경별	요액
13m/m	400원	50m/m	2,200원	250m/m	30,000원
20m/m	540원	75m/m	4,600원	300m/m	-
25m/m	620원	100m/m	6,200원		
32m/m	880원	150m/m	10,400원		
40m/m	1,140원	200m/m	19,200원		

[별표 5]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행정처분
1. 급수틀 도용한 자	500,000원 (단, 가정용 200,000원)	· 부정 급수장치 철거 명령
2.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공사를 한 자	500,000원 (단, 가정용 200,000원)	· 미승인시설 급수장치 철거명령
3.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무단이설 또는 망실한 자	200,000원 (단, 가정용 100,000원)	· 직전 3개월간의 사용량 평균을 기준으로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망실기간 동안의 사용료 추징, 단, 3개월미만시는 사용기간의 평균을 기준 · 계량기 훼손 또는 망실에 대한 변상조치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건물구조 변경, 오물투기, 공작물 설치로 인한 검침장애, 봉인 파손한 자	200,000원 (단, 가정용 10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은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을 한 자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6. 시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을 파손한 자	100,000원 (단, 가정용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승인없이 업종을 변경한 자		· 업종변경기간 동안 차액 추징 · 업종 직권변경

#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산시 공고 제99-30호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2. 10.

서 산 시 장

## 1. 조 례 명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 2. 개정취지

상수도요금 및 제수수료등을 인상하고 또한 상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을 읍면동 단일화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함.

## 3.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검정시험 폐지 및 자격요건 완화 (안 제10조)

-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검정시험 폐지
- 건축배관 및 배관기능사(위생분야) 자격 취득자를 배관관련 기능사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자격자 추가적용
-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상하수도 설비면허소지자를 서산시 지역제한 폐지

나. 시설분담금 조정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된 것을 단일화 함 (별표1)

다. 32mm 상수도 계량기 설치 (별표 1)

라. 신고사항중 가구분할 신고시 시에서 확인 가능한 가구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마. 시장이외의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돗물 판매금지조항 신설 (안 제21조)

바. 상수도 요금의 조정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된 것을 단일화 하고 생산원가 58% 수준인 현재 요금을 생산원가 74% 수준인 평균 26%를 인상토록 함. (별표 2)

사. 1개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 수도병행사용시 세대당 월 15톤씩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용의 업종도 적용토록 함 (안 제29조)

아. 사용수량의 인정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한 옥내누수는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 (안 제30조)

자. 제수수료 조정

-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관련 수수료 인상 (안 제10조)
- 제수수료 인상 (안 제38조)

차.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적용 조정

욕탕 2종 적용에서 영업용과 욕탕 2종으로 적용토록 함 (별표 3)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1999. 3. 1.까지 서산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55-660-35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